

<붙임>

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

1. 정관변경사유

당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의거 2019년 11월 19일 투자자문업을 등록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.

2. 주요 변경내용

조 문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목적)	1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. 국내 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, 연구, 분석, 및 용역 제공업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업 1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	1.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. 투자자문업(추가) 1. 경영컨설팅(추가) 1. 국내 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, 연구, 분석, 및 용역 제공업 1.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업 1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

■ 첨부서류

1.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
2.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